

【붙임 1】

사무직 · 비사무직 근로자 구분기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9조제2항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단,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는 경우는 비사무직 근로자로 구분,

- ‘동일한 구내’라 함은 담 또는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동 경계 안’을 의미

사무직 근로자	비사무직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된 업무가 정신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 ▶ 주로 사무실책상에서 일을 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된 업무가 육체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 ▶ 주로 제조, 생산, 건설 등 현장에서 일을 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 관리자 ○ 총무, 서무, 인사, 기획, 노무, 홍보, 경리, 회계,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 서비스 사무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 · 음식점 접수원 등 - 병원 행정, 원무, 보험 사무원 등 - 일반 사무 보조원, 비서 ○ 내근기자 ○ 교육기관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강사, 유치원교사, 보조교사 ○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작가, 아나운서, 디자이너 ○ 금융, 증권, 보험업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원, 증권중개인, 손해사정인 등 ○ 건축설계사, 제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노무 종사자 ○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 직접 판매에 종사하는 자 ○ 방문주문 및 수금업무 등을 주업무로 하는 영업직 근로자 ○ 항공기승무원, 선원, 자동차 운전원 ○ 이 · 미용사, 조리사 ○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 외근기자 ○ 교육기관 종사자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강사, 실습강사 ○ 어린이집 보육교사 ○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듀서, 연기자, 안무가 - 촬영, 녹음 등 방송관련기사 ○ 보험업 종사자 중 보험모집인 ○ 군인 및 군무원, 소방직공무원

주) 동 자료는 노동부의 자문을 펼한 것임

【붙임 2】

직장가입자 근무구분 질의회신 요약

다음 사례는 사업장이 질의한 '사무직 및 비사무직 근무구분기준'에 대한 지방노동청 및 지청의 회신 문서를 요약 정리한 것이오니, 근로자(공교 포함) 가입자의 근무구분 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 호텔의 서비스직원, 은행의 창구직원, 철도청의 매표원, 놀이동산 등의 매표원 등은 생산직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무직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

'비사무직종사근로자'와 '사무직종사근로자'의 정의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에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설계 등 사무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준용하여 "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 호텔의 서비스직원, 은행의 창구직원, 철도청의 매표원, 놀이동산의 매표원" 등은 비사무직종사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질의2>

일반건강진단 실시와 관련한 컴퓨터프로그래머의 사무직과 비사무직 구분은?

<답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고정된 장소)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즉 주된 업무가 정신적 근로임을 의미하고, '동일한 구내'라 함은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이거나 서로 독립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귀사에서 질의한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업무 내용상 정신적 근로에 가까우므로 사무직근로자로 구분될 수 있으나, 이는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이 아니고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직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질의3>

아파트형 공장 소속근로자의 사무직과 비사무직 구분은?

<답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고, ‘동일한 구내’라 함은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이거나 서로 독립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공장과 사무실이 한 건물에 위치한 아파트형 공장은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건물이고 서로 독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속근로자 모두 기타(비사무직) 근로자로 분류하여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4>

사무실 근로자라 하더라도 생산현장(공장)과 부대시설에 수시로 출입하여 출하, 자재관리, 현장물품확인, 순찰, 점검, 작업지시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 건강진단에서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

공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않은 사무동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업무 특성상 생산 현장(공장)이나 부대시설에 수시로 출입하여 일정시간 이상의 생산업무 등을 병행하는 경우 ‘근로자 건강진단에서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질의5>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 경리(서무), 시설관리, 경비, 미화원 등의 사무직, 비사무직 구분은?

<답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공장 또는 공사현장이 아니므로 경리(서무), 관리소장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아 2년에 1회 이상, 시설관리, 경비, 미화원 등에 대하여는 기타 근로자로 보아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질의6>

당사 ○○공장은 생산을 주업으로 하는 제조공정이며, 사무동과 생산동이 별도 건물로 구분되 있기는 하나 주 생산동과는 불과 이격거리가 10m내외이고, 메인동력인 컴퓨터로 부터는 약 7m정도의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소음 등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업무내용에 있어서도 비록 사무동에서 사무업무를 보기는 하나 제조 현장을 직접지도, 협의해야 할 내용이 다수인 상황임.

상기와 같은 조건하 상황하에서도 사무직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답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동일한 구내’라 함은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이거나, 동일 건물이 아니라도 생산동에서 발생하는 요인의 영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귀사의 경우 사무직 근로자들이 제품출하장에서 발생하는 요인에 영향을 받는 위치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공장본동에서 근무시간의 일부를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 건강진단에서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분류할 수 없음.

<질의7>

당사는 1993년도 ○○공단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합성수지를 제조하는 제조업체로서 현재 생산을 담당하는 생산본부가 군산에 있으며 이하 대표이사 및 기획, 경리, 회계, 영업 등을 담당하는 영업본부, 업무본부 등이 서울 양재동에 상주 근무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제2항에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현재 군산에 근무중인 전 직원에 대하여 생산직으로 분류하여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이견은?

<답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동일한 구내’라 함은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이거나, 동일 건물이 아니라도 생산동에서 발생하는 요인의 영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귀사의 경우 생산본부에 근무하는 관리팀 중 생산현장에 순찰이나 점검·검수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무직에 한하여 ‘근로자 건강진단에서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음.

<질의8>

114안내업무나 전화고장신고 접수업무 등을 처리하는 TM상담원의 경우는?

<답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이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114안내업무나 전화고장신고 접수업무 등을 처리하는 TM상담원의 경우에는 기타근로자(비사무직)에 해당됨.

<질의9>

당사는 사무동과 공장동이 이격거리가 멀지 않고 자동차제조업 특성상 사무직 근로자들이 수시로 공장을 출입하여 설비, 장비, 인원 등을 점검하는 바, 이들 근로자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주기는?

<답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동일한 구내’라 함은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이거나, 동일 건물이 아니라도 생산동에서 발생하는 요인의 영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귀사의 경우 사무동 근로자라 하더라도 생산현장(공장)과 부대시설에 일정시간 이상 출입하여 출하, 자재관리, 현장물품확인, 순찰, 점검, 작업지시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 건강진단에서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분류할 수 없음.

<질의10>

점포내에서 근무하는 케샤, 경리, 점장, 부점장, 관리담당 등을 사무직으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순수하게 사무실내에서 업무를 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본 질의 내용과 같이 순수하게 사무실내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판매 등 육체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비사무직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봄.

<질의11>

- 가. 공장내의 인사, 총무, 구매, 경리, 산림, 전산, 관리이사, 노동조합전임자, 방화관리자, 안전관리자, 간호사는 생산공장과 별도 건물에서 근무자 사무직 또는 비사무직 여부?
- 나. 순찰 및 업무차 매일 또는 수시로 현장을 출입하는 관리이사, 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노동조합전임자, 전산, 구매, 인사, 총무 근무자 및 당사의 조림 사업에 관리업무 산림(장거리 및 산악지역 출장이 잦음) 등에 종사하는 근무자 의 사무직 또는 비사무직 여부?

<답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동일한 구내’라 함은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이거나, 동일 건물이 아니라도 생산동에서 발생하는 요인의 영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사무동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생산현장과 부대시설에 수시로 출입하여 출하, 자재관리, 순찰, 점검, 작업지시 등을 하는 근로자와 영업·운전·조림 등과 같이 출장을 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건강진단에서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분류할 수 없음.

<질의12>

- 양로원의 특성상 24시간 교대근무와 소수의 인력배치로 인해 보호 거주자들을 위한 서비스 업무(거주자케어, 일상생활편의서비스, 의료서비스 등)를 전직원이 담당하고 있어, 사무직과 비사무직을 구분하기 어려워 이에 관련하여 정확한 근무구분은?

<답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함.

위에서 동일한 구내라 함은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이거나 서로 독립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므로 귀 원의 업무분장표를 참고한 바, 귀원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은 동일건물에서 서비스업무를 주로 하므로 원장 이하 모두 비사무직으로 1년 1회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13>

당사는 현장과 사무실이 따로 구분되어 있으나 사무실 직원도 현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경우 사무실 직원이 일반건강진단의 사무직 근로자인 기타 근로자인지?

<답변>

사무직 근로자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 개별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하며, 귀 사와 같이 동일한 구내에 생산현장과 사무동이 별도로 있으면서 사무실 직원이 생산현장에 출입을 하면서 업무를 한다면, 사무실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 근로자가 아닌 '기타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붙임 3】

지방노동관서 소재지 및 관할구역

기 관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관 할 구 역
서울지방노동청	중구 장교동 1 장교빌딩 1~6층, 9층	02)2250-5781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 및 성북구
서울강남지청	서초구 방배로 233(방배3동 1022-10)	02) 598-1671	서울특별시 강남구 및 서초구
서울동부지청	송파구 올림픽로 100 (방이동 160 그랜드프라자빌딩)	02)2142-8870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송파구 및 강동구
서울서부지청	마포구 도화동 173 삼창프라자빌딩 3~5층	02)2077-6170	서울특별시 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 및 은평구
서울남부지청	영등포구 버드나룻길 114 (당산동 6가 121-103)	02)2639-226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강서구 및 양천구
서울북부지청	강북구 한천로 953 (변동 432-5)	02) 950-98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도봉구·강북구·중랑구 및 노원구
서울관악지청	구로구 창조길 49(구로3동 222-30)	02)3281-5021	서울특별시 관악구·구로구·금천구 및 동작구
의정부지청	의정부시 용현동 526-1	031)850-7632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남양주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고양지청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2동 1010 KT고양사옥 5,6층	031)931-2870	경기도 고양시 및 파주시
춘천지청	춘천시 후평동 240-3 (춘천지방합동청사 2층)	033)258-3580	강원도 춘천시·홍천군·인제군·화천군·양구군 및 경기도 가평군
강릉지청	강릉시 포남서2길 49(포남1동 1117-14)	033)646-2515	강원도 강릉시·속초시·동해시·양양군 및 고성군
원주지청	원주시 단계로 283 (단계동 783 정부합동청사)	033)731-4900	강원도 원주시 및 횡성군
태백지청	태백시 황지동 25-14	033)552-8603	강원도 태백시 및 삼척시
영월출장소	강원도 영월군·음영홍5리 976-1	033)374-1724	강원도 영월군·정선군 및 평창군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시 연제구 연제로 13 (연산2동 1470-1)	051)850-6473	부산광역시 중구·동구·서구·사하구·영도구·남구·부산진구 및 연제구
부산동래지청	부산시 동래구 충렬로 32 (명륜동 529-5)	051)552-3025	부산광역시 동래구·해운대구·금정구·수정구 및 기장군
부산북부지청	부산시 사상구 백양로 920 (덕포2동 760-2)	051)305-4949	부산광역시 북구·사상구 및 강서구
창원지청	창원시 중앙로 155(용호동 7-5)	055)239-6580	경상남도 마산시·진해시·창원시·창녕군·함안군 및 의령군
울산지청	울산시 남구 풍요나길 24(옥동 126-1)	052)228-1882	울산광역시
양산지청	양산시 동면 석산리 1440-2번지	055)387-0805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 및 양산시
진주지청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299-1번지	055)752-1751	경상남도 진주시·사천시·합천군·거창군·산청군·하동군·함양군 및 남해군
통영지청	통영시 해미당로 107(무전동 356-130)	055)650-1949	경상남도 통영시·거제시 및 고성군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관할구역
대구지방노동청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482 (범어동 743)	053)667-6360	대구광역시 중구·동구·남구·수성구·달성군, 경상북도 영천시·경산시 및 청도군
대구북부지청	대구시 북구 구암로 83(관음동 1372-1)	053)605-9150	대구광역시 북구·서구·달서구, 경상북도 군위군·칠곡군(석적면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다)·고령군 및 성주군
포항지청	포항시 남구 대잠동 940	054)275-6875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릉군 및 울진군
구미지청	구미시 송정동 51	054)450-3550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 및 칠곡군 석적면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영주지청	영주시 휴천3동 36	054)634-0913	경상북도 영주시·상주시·문경시 및 봉화군
안동지청	안동시 태화동 715-3	054)851-8049	경상북도 안동시·예천군·의성군·영양군 및 청송군
경인지방노동청	인천시 남동구 노동청길 91 (구월3동 1113)	032)460-4400	인천광역시 중구·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 및 옹진군
인천북부지청	인천시 계양구 등기소길 8 (계산4동 1077-1)	032)556-0933	인천광역시 부평구·계양구·서구 및 강화군
수원지청	수원시 장안구 서부우회로 337 (천천동 575-5)	031)259-0253	경기도 수원시·용인시 및 화성시
평택지청	평택시 중앙로 4가 203 CK빌딩 3~5층 (서정동 814)	031)646-1183	경기도 평택시·오산시 및 안성시
부천지청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225 (중4동 1032-2)	032)714-8781	경기도 부천시 및 김포시
안양지청	안양시 만안구 샘물길 31 (안양7동 199-35)	031)463-1150	경기도 광명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 및 군포시
안산지청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1길 16 (고잔동 526-1)	031)412-1970	경기도 안산시 및 시흥시
성남지청	성남시 분당구 번영로 215 (야탑동 135-1)	031)788-1571	경기도 성남시·하남시·이천시·광주군·양평군 및 여주군
광주지방노동청	광주시 동구 천변우로 536 (호남동 23-2) 대원빌딩 1~5층	062)2207-300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나주시·화순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장성군·영광군 및 합평군, 제주특별자치도
전주지청	전주시 덕진구 신덕1길 78 (인후동 1가 807-8)	063)240-3399	전라북도 전주시·남원시·정읍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완주군·진안군 및 무주군
익산지청	익산시 하나2로 44(어양동 626-1)	063)839-0033	전라북도 익산시 및 김제시
군산지청	군산시 시청북문길 62(조촌동 852-1)	063)450-0530	전라북도 군산시·부안군 및 고창군
목포지청	목포시 노동부길(상동 976)	061)280-0171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영암군·강진군·완도군·해남군·장흥군·진도군 및 신안군
여수지청	여수시 문수로6 (문수동 111-1)	061)6500-130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 및 보성군
대전지방노동청	대전시 서구 시청북2길 12 (둔산동 1303)	042)480-6301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연기군
청주지청	청주시 흥덕구 제1순환로 104 (분평동 1427 합동청사 4층)	043)299-1310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군·진천군·괴산군·보은군·옥천군·영동군 및 증평군
천안지청	천안시 두정동 원두정1길 792	041)560-2861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예산군 및 당진군
충주지청	충주시 봉방동 21-38	043)845-7766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음성군 및 단양군
보령지청	보령시 옥마로 28(명천동 58-6)	041)930-6140	충청남도 보령시·서산시·서천군·청양군·홍성군·부여군 및 태안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항만 노동부 및 지방노동청으로 문의하시고,
건강검진 관련사항은 공단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